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17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(기획평가과), 02-970-6077

제정 2012. 3. 1.

개정 2014. 1. 22.

타규정개정 2015. 6. 5.

학칙개정 2017. 7. 3.

개정 2020. 4. 9.

전부개정 2022. 11. 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공간"이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내 인적·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하는 건물 공간을 말한다.
- 2. "사용주체"라 함은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(교수, 학과, 전공, 학부, 단과대학, 부속기관, 연구소, 부서 등)를 말한다.
- 3. "관리주체"라 함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총장으로부터 공간의 사용 및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(단과대학의 장, 부서의 장 등)를 말한다.

- 4. "기준면적 "이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배정기준에 의해 사용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.
- 5. "초과면적"이라 함은 사용주체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.
- 6. "유료공간"이라 함은 기준·초과면적과는 별개로 사용주체의 필요에 의해 배정받아 공간사용료를 납부하며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.
- 7. "특수시설공간"이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또는 학문적 특성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수한 시설공간을 말한다.
- 제3조(공간의 관리 및 사용 기본원칙) ① 공간을 배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교육 목적의 수행을 최우선으로 한다.
 - ② 본교 내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총장의 중앙 관리 하에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총장은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④ 관리주체와 사용주체는 공간 본래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
- 제4조(권한의 위임) ①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별표1의 관리주체에게 공간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 며,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위임한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을 회 수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 - ② 관리주체는 위임 받은 범위의 공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, 총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배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장 공간조정위원회

- 제5조(공간조정위원회 구성) ① 공간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공간의 배정, 조정, 분쟁 등 공간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간조정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일반대학원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연구처장, 사무국장, 각 단과대학장, 공동실험실습관장, 시설과장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, 부위원장은 연구기획부총장이 된다.
 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필요 시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 -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기획처장으로 한다.
- 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 - 1. 공간의 배정, 조정, 구조 및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
 - 2. 신축·개축·증축·리모델링 건물의 실별 사전 용도 심의·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교육공간(강의실 및 실험실습실) 요구 및 공동활용 심의·조정에 관한 사항
 - 4. 공간의 회수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
 - 5. 특수시설공간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
 - 6. 공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공간 사용 및 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- 1. 교수연구실의 신규 및 변경 배정
 - 2. 관리주체가 별도의 배정 기준에 따라 위임 받은 공간의 용도에 맞게 배정하는 경우

- 3. 단기간(6개월 미만) 공간을 임시로 배정하는 경우
- 4. 사용주체 및 용도의 변경 없이 단순히 공간의 호실번호, 호실명만 변경하는 경우
- 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안건을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장 등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3장 공간배정 및 운영

- 제8조(공간의 배정) ① 총장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, 합리적으로 배정하기 위하여 공간배정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한다.
 - ② 사용주체는 공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사용요청을 하여야 하며, 총장은 타당성과 필요성, 배정기준, 공간여력 등을 검토하여 공간을 배정한다.
 - ③ 사용 주체가 공간을 초과 보유하고 있거나 학교 사정상 공간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간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9조(공간의 변경) 사용주체는 공간 본래의 목적과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수 없으며, 공간의 호실명·사용용도·사용주체·구조·면적 등을 변경하거나 이전 하고자 할 경우 총장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공간의 반납 및 회수) ① 사용주체는 공간의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, 원상복구 후 반납을 원칙으로

한다.

- ② 총장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간 활용률 · 연구실적 · 실습 수업 배정 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, 기타 학교 사정 등에 의해 공간을 회수할 수 있으 며, 사용주체는 지체없이 대학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주체의 소속 단과대학·학(부)과·부서에서는 다른 사용주체의 사용 및 타용도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공간의 사용 현황 조사) ① 총장은 공간 배분의 적정성, 공간의 활용 정도, 공간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간사용 현황조 사를 실시하고, 이를 기반으로 공간을 재배정할 수 있다.

제4장 공간사용료

- 제12조(공간사용료) ① 초과면적 공간과 유료공간은 공간사용료를 부과함을 워칙으로 한다.
- ② 공간사용료는 사용주체가 부담하며, 징수액은 본교 대학회계에 세입 조치한다.
- ③ 공간사용료 징수액은 사용실태 조사 등의 공간관리 비용,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·설비의 확충 및 유지·보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총장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- 제13조 (제재조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관리 및 사용주체에게 공간 회수,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- 1. 임의로 공간을 사용한 경우
 - 2. 임의로 공간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
 - 3.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간을 반납 하지 않거나 회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
 - 4. 공간사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
- 5. 그 밖의 방법으로 본 제도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제14조(기타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칙(제225호, 2014. 1. 2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283호, 2015. 6. 5.)

(대학회계 신설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등 일부개정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84호, 2017. 7. 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26호, 2020. 4. 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717호, 2022. 11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건물(공간) 관리주체(신설)

건물(공간) 관리주체(제4조 관련)

건물(공간)	관리기관	관리주체	비고
테크노큐브동 (5층 ~ 12층)	산학협력단	산학협력단장	
불암학사, KB학사, 성림학사, 창명학사, 수림학사, 누리학사	생활관	생활관장	
제1창업보육센터, 제2창업보육센터	창업보육센터	창업지원단장	
서울테크하우스	총무과	사무국장	
서울테크어린이집	총무과	사무국장	
제1학생회관, 동아리관 (중앙 동아리실)	학생지원과	학생처장	

[별지 제1호서식] <삭제>(개정 2020.4.9)

[별지 제2호서식] <삭제>(개정 2022.11.1)

[별지 제3호서식] <삭제>(개정 2022.11.1)